



# 선거관리보

www.nec.go.kr

제60호



» 이번호 게재내용

2. 이제 지역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3. 깨끗한 선거문화 기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4. Beautiful@day 로 새로운 투표참여운동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6. 정당·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7.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확인·조사합니다.
8. 지방선거결과 각종통계
14.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운동,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15. 2006년도 상·하반기 각종 선거 주요일정



매니페스토 <sup>“참공약 선택하기”</sup> 운동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4년동안  
 당선자들은 선거공약을 실천하고,  
 국민들은 이를 지켜보고 평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 이 관리보는 공직선거에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정당, 후보자, 사회·시민·종교단체, 언론 등 여론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 이 관리보는 귀중한 세금으로 만든 것이니 돌려보도록 하여 주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제 지역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 때 보다도 깨끗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정당공천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없었던 일부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전에 없던 매니페스토운동이 확산되면서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선진 선거문화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선거환경 속에서도 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공명선거 조성을 위해 앞장선 언론·사회·시민·종교단체 그리고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곧 제4기 지방자치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생겨났던 반목과 갈등은 말끔히 털어버리고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지역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내가 찍지 않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택되었더라도 임기중 소신껏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시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비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남은 업무를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선진 선거문화가 확고히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깨끗한 선거문화 - 기쁨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루어낸 깨끗한 선거기조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 전부터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선거법 안내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철저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발견되지 않던 당내경선과 관련한 은밀한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심관광·금품·음식물제공 사례는 대폭 감소되는 등 선거문화가 유례없이 깨끗해져가고 있습니다.

### ☑ 선거법 위반사례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선거일 현재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적발·조치된 총 위반건수는 5,955건으로 제3회 지방선거시 총 위반건수 8,685건에 비해 32%인 2,73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선거기간 중인 5·18부터 5·31까지 적발·조치된 건수는 모두 1,304건으로 지난 제3회 지방선거시 2,599건의 절반인 1,295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2006. 6. 11현재)

구 분	제3회 지방선거 (2002. 6. 13)			
	계	고 발	수사의뢰	경고 등
총 계	8,685 (2,599)	769 (366)	553 (273)	7,363 (1,960)

구 분	제4회 지방선거 (2006. 5. 31)			
	계	고 발	수사의뢰	경고 등
총 계	5,955 (1,304)	734 (219)	427 (158)	4,794 (927)

※ ( ) 내서는 선거기간중 적발·조치건수임

### ☑ 금품·음식물관련 위반사례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3회 지방선거시 금품·음식물관련 위반사례가 2,222건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1,328건으로 40%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04년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직전에 도입된 50배 과태료제도가 언론에 집중 홍보되면서 선거기간중 금품·음식물관련 위반사례가 제3회 지방선거시 403건

이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166건으로 6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2006. 6. 11현재)

구 분	제3회 지방선거 (2002. 6. 13)			
	계	고 발	수사의뢰	경고 등
금품·음식물	2,222 (403)	364 (102)	269 (94)	1,589 (207)

구 분	제4회 지방선거 (2006. 5. 31)			
	계	고 발	수사의뢰	경고 등
금품·음식물	1,328 (166)	352 (71)	212 (55)	764 (40)

※ ( ) 내서는 선거기간중 적발·조치건수임

### ☑ 그러나 당비대납 등 당내경선 관련 위반사례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각 정당에서 당내경선을 제도화한 이래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해 공식선거 후보선출권을 부여하고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정당에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부 경선 참여자들이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사례가 이번 선거에서 적발되었습니다.

※ 당비대납 적발·조치건수: 59건 (고발 24 수사의뢰 20, 경고 등 15)

또한 이번 선거부터 중대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그동안 소수인원에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져 오던 공천현금 관련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공천현금 적발·조치건수: 26건 (고발 12 수사의뢰 13, 경고 등 1)

이러한 당내경선관련 위반사례는 비록 후보자와 유권자가 직접 관련된 위반사례가 아니기는 하나 이 또한 시급히 사라져야 할 잘못된 선거문화로써 우리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 Beautiful@day로 새로운 투표참여운동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48.9%로 전국단위 선거로서는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이번 5. 31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참여가 선거 사상 최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선거홍보와 다른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홍보전략과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지방선거의 국민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밝은 선거,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선거일을 '아름다운 날(Beautiful Day)'로 명명하고 Beautiful@day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방법에 있어서도 선거가 풍기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티저(Teaser)광고, 즐거운 선거콘서트, 월드컵축구국가대표 부재자 투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대표적인 민간 홍보기법인 통합홍보(IMC)를 추진하였습니다.

## ▶ 통합홍보 기법을 도입한 Beautiful@day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 '선거는 아름다운 것이다'(떳떳하게 정책으로 경쟁하는 후보자가 아름답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도 아름답고, 선거종료후에 승자와 패자가 화합하는 선거문화가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공공조직으로서 다소 파격적인 Beautiful@day 라는 슬로건을 채택하여 모든 홍보전략과 방법을

단일 컨셉으로 집중하는 통합홍보(IMC :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를 전개하였습니다.

• 『5월 31은 Beautiful@day』라는 하나의 슬로건 아래 TV·라디오 CM, 포스터, 리플릿, 인터넷 홍보, 다양한 시청각 매체, 각종 시설물·인쇄물 등을 통해 '투표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연스런 참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 모두가 이득이 되는 3-WIN 홍보를 추구하였습니다.

유권자(국민 : 참여의식 신장)-참여그룹(기업·단체 : 사회공헌기회 확대)-선관위(투표참여 분위기 확산)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3-WIN의 홍보를 추구하였습니다.

•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금융기관, DMB업체 등의 협찬·후원으로 TV-CF와 각종 홍보영상을 확대 방영하고 7개 종단의 종교단체 지도자와 함께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채택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 대한축구협회와 공동으로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부재자 투표참여를 추진하여 "5월엔 투표의 물결을, 6월엔 응원의 물결을" 캐치프레이즈로 채택하여 월드컵 응원의 열기를 투표참여의 물결로 유도하였고,
- 국내 종자회사의 협찬을 통해 미아사진이 게재된 채소씨앗 10만봉을 제작하여 투표참여 리플릿에 동봉하여 유권자에게 배부하는 한편, 기업체·단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 ▶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감성홍보를 구사하였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호소하는 '감성홍보'를 위해 다양하고 세련된 영상물을 제작·활용하였습니다.

- 공익광고 사상 최초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티저광고(Teaser Adversting)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최고의 톱모델인 문근영과 김주혁이 출연하는 CF로 국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고,
-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시청률 1위의 개그프로그램인 KBS '개그콘서트' 제작진과 손잡고 개그맨 33명이 총 출연하는 '즐거운 선거콘서트'영상을 제작하여 신선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 또한, 유명영화 명장면을 패러디한 '영화장면'이 용 CF'를 제작하여 선거홍보의 색다른 묘미를 제공하였고, 각계를 대표하는 유명인사와 스타 100인이 출연한 투표참여 호소 영상물을 제작·홍보, 함으로써 잔잔한 감동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 온라인 홍보를 입체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 선거 및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선관위 정치포털사이트(<http://epd.nec.go.kr>)에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담은 '아름다운 유혹 10'라는 홍보전용 섹

션 페이지를 개설하여 920만명에 달하는 폭발적인 네티즌의 방문을 이끌어 내었고,

- 정치포털사이트 및 시중 대형포털사이트와 공동으로 후보자 정보 제공을 통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함께 투표소 찾기 이벤트, 선거상식 퀴즈 이벤트, 패러디 포스터 공모전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네티즌의 자연스런 동참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활용 가능한 모든 홍보방법을 동원하고 민간 기업에 못지 않은 기법을 과감히 활용,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침과 아울러 일관된 컨셉으로 체계적·입체적 홍보전략을 구사한 결과, 당초 투표참여가 선거사상 최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51.6%라는 투표율을 달성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던 투표율을 반등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정당·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고** 직선거법에서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 선거비용 보전대상 및 범위

- 후보자가 당선되었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시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시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한 명 이상의 당선인이 있는 때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비용 보전의 제한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 마감일(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합니다.


## 선거비용 보전대상 주요항목

- 선전벽보·선거공보 작성비용, 현수막 작성·게시비용, 방송연설비용, 선거운동에 사용된 전화요금(단,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은 제외)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장장치 임차비용,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 대한 식사비용, 기타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비용 등

## 보전하지 않는 주요항목

-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 위법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음료등 구입비용
- 신고된 정치자금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 선거비용보전 청구 및 방법

- 정당·후보자는 선거일후 10일(6. 10)까지 선거비용을 지출한 근거서류로 계약서, 영수증,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비용보전을 청구해야 합니다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한 후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에 한해 선거일후 60일(2006. 7. 30)까지 보전하여 줍니다. 

#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확인·조사합니다.

**고** 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고, 선거가 끝난 후 수입·지출한 선거비용의 내역 등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수입·지출회계를 마감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6월 20일까지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를 마감하고 6월 30일까지 정치자금수입·지출증빙서류 사본이 첨부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와 선거비용 수입·지출증빙서류 절 사본이 첨부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지출보고서 사본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는 그 사본을 공고한 날부터 3월간 공개되며,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본교부비용을 납부하고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지출보고서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한 보고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또는 관계인에게 선거비용의 수입·지출과 관련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명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을,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이 없음을 공고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위법행위가 있는 때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합니다.

-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의 적정여부를 서면심사하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수집한 자료가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 및 누락·허위보고 등을 면밀히 확인·검토 합니다
- 이어 서면심사 결과 자료를 가지고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현지방문 확인·조사, 자료제출요구, 구술조사, 서면조사,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지출내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합니다
- 선거비용 확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회계장부 기타 출납서류 또는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기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 하거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 후보자가 선거법에 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 지방선거결과 각종통계

## I. 총괄

구분	합계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소계	지역구	비례대표	교육의원	소계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구수	2,180	16	230	676	655	16	5	1,258	1,028	230	
정수	3,872	16	230	738	655	78	5	2,888	2,513	375	
당선인수(A)	3,872	16	230	738	655	78	5	2,888	2,513	375	
후보자수(B)	12,178 (49)	66 (·)	839 (9)	2,287 (6)	2,062 (6)	211 (·)	14 (·)	8,986 (34)	7,968 (27)	1,018 (7)	
평균경쟁률(B/A)	3.1	4.1	3.6	3.1	3.1	2.7	2.8	3.1	3.2	2.7	
후보자 1인 단체장선거	2	-	2	-	-	-	-	-	-	-	
무투표 지방의회 의원선거	46	-	-	13	13	-	-	33	2	31	
투표결과	선거인수	-	37,064,282	36,652,420	-	36,207,648	37,064,282	411,862	-	36,581,991	35,111,347
	투표수	-	19,118,177	18,836,531	-	18,678,607	19,117,594	276,988	-	18,810,765	17,855,651
	투표율(%)	-	51.6	51.4	-	51.6	51.6	67.3	-	51.4	50.9

※ 주1 : ( )는 등록무효·사퇴·사망 후보자수로 본수에 포함되지 않음  
 ※ 주2 : 각 선거별 선거인수 및 투표수 차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선거 미실시 및 무투표지방의원선거에 기인함.

## II. 후보자 등록상황

### 1. 등록후보자수별 선거구수 현황

구분	후보자수	후보자수별 선거구수											
		계	후보자없음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이상
계	10,949 (42)	1,934		15	222	333	294	221	188	189	138	97	237
시·도지사	66 (·)	16			1	3	9	1		1			
구·시·군의장	839 (9)	230		2	46	63	65	34	10	8	1		1
지역구시·도의원	2,062 (6)	655		13	171	247	162	51	9	1	1		
제주도교육위원	14 (·)	5			2	2	1						
지역구구·시·군의원	7,968 (27)	1,028			2	18	57	135	168	180	135	97	236

※ 주1 : ( )는 등록무효·사퇴·사망 후보자수로 본수에 포함되지 않음.

### 2. 등록후보자수별 선거구수 현황

선거명	경쟁률 최고			
	선거구명	정수	후보자수	경쟁률
시·도지사	서울특별시	1	8	8.0 : 1
구·시·군의장	군산시	1	11	11.0 : 1
지역구시·도의원	부안군제2선거구	1	8	8.0 : 1
지역구구·시·군의원	영월군가선거구	3	22	7.3 : 1

## III. 당선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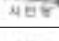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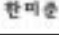
### 1. 정당별 당선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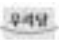
구분	합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계	3,872	702	2,345	378	81
시·도지사	16	1	12	2	-
구·시·군의장	230	19	155	20	-
시·도의원	지역구	655	33	519	71
	비례대표	78	19	38	9
	교육의원	5	-	-	-
구·시·군의원	지역구	2,513	543	1,401	233
	비례대표	375	87	220	43

구분	국민중심당	시민당	한미준	희망사회당	무소속
계	89	-	-	-	277
시·도지사	-	-	-	-	1
구·시·군의장	7	-	-	-	29
시·도의원	지역구	13	-	-	14
	비례대표	2	-	-	-
	교육의원	-	-	-	5
구·시·군의원	지역구	56	-	-	228
	비례대표	11	-	-	-

※ 주1 : ( )는 후보자 1인 또는 무투표당선인 수로 본수에 포함  
 ※ 주2 : 교육의원은 무소속에 포함

2. 정당별 득표수

구 분	시·도지사		구·시·군 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득표수	득표율 (%)	득표수	득표율 (%)	득표수	득표율 (%)
합 계	18,857,606	100.0	18,510,816	100.0	18,288,800	100.0
 열린우리당	5,106,984	27.1	4,277,001	23.1	4,329,794	23.7
 한나라당	10,418,021	55.2	9,396,305	50.8	9,291,686	50.8
 민주당	1,709,452	9.1	1,530,908	8.3	1,602,034	8.8
 민주노동당	1,099,592	5.8	648,353	3.5	507,157	2.8
 국민중심당	345,295	1.8	403,464	2.2	408,610	2.2
 시민당	4,790	-	482	-	-	-
 한미준	7,188	-	4,176	-	-	-
 희망사회당	0	-	-	-	6,039	-
무 소 속	166,284	0.9	2,250,127	12.2	2,143,480	11.7

구 분	비례대표 시·도의원		교육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득표수	득표율 (%)	득표수	득표율 (%)	득표수	득표율 (%)	득표수	득표율 (%)
합 계	18,763,078	100.0	5	100.0	18,317,171	100.0	17,444,314	100.0
 열린우리당	4,056,367	21.6	-	-	3,544,024	19.3	4,196,455	24.1
 한나라당	10,086,354	53.8	-	-	8,317,356	45.4	9,422,971	54.0
 민주당	1,863,239	9.9	-	-	1,575,921	8.6	1,792,908	10.3
 민주노동당	2,263,051	12.1	-	-	1,072,826	5.9	1,655,305	9.5
 국민중심당	436,774	2.3	-	-	390,755	2.1	376,675	2.2
 시민당	7,583	-	-	-	455	-	-	-
 한미준	5,112	-	-	-	2,708	-	-	-
 희망사회당	44,598	0.2	-	-	2,189	-	-	-
무 소 속	-	-	5	100.0	3,410,937	18.6	-	-

3. 직업별 당선인수

구 분	합계	시·도 지사	구·시·군 의 장	시·도 의원				구·시·군 의원		
				소계	지역구	비례대표	교육의원	소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 계	3,872	16	230	738	655	78	5	2,888	2,513	375
지 방 의 원	785	-	9	150	147	3	-	626	623	3
정 치 인	654	6	71	194	169	25	-	383	307	77
농·축 산 업	352	-	1	47	38	6	3	304	286	18
상 업	354	-	6	45	42	3	-	303	284	19
광·공 업	14	-	-	1	-	1	-	13	13	-
운 수 업	32	-	2	6	5	1	-	24	24	-
수 산 업	20	-	-	5	3	1	1	15	15	-
건 설 업	179	-	3	27	27	-	-	149	143	6
언 론 인	3	-	-	-	-	-	-	3	3	-
금 용 업	39	-	1	7	7	-	-	31	29	2
약 사·의 사	25	-	-	12	6	6	-	13	8	5
변 호 사	3	1	1	1	1	-	-	-	-	-
종 교 인	2	-	-	-	-	-	-	2	1	1
회 사 원	124	-	1	20	17	3	-	103	95	8
교 육 자	84	1	7	28	16	11	1	48	27	21
정 보 통 신 업	11	-	-	5	4	1	-	6	6	-
출 판 업	8	-	-	2	1	1	-	6	5	1
공 무 원	128	6	89	14	14	-	-	19	18	1
무 직	106	-	8	14	13	1	-	84	52	32
기 타	949	2	31	160	145	15	-	756	574	181

4. 학력별 당선인수

구 분	합계	미기재	무학(독학)	초퇴	초졸	중퇴	중졸	고퇴
계	3,872	137	13	1	131	27	189	55
시·도지사	16	-	-	-	-	-	-	-
구·시·군의 장	230	1	-	-	3	-	3	3
시·도 의원	지역구	655	9	1	-	5	1	15
	비례대표	78	-	1	-	2	-	3
	교육의원	5	-	-	-	-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2,513	115	9	1	98	24	145
	비례대표	375	12	2	-	23	2	23

구 분	고졸	대퇴	대학교수료	대재	대졸	대학원수료	대학원재	대학원졸
계	672	97	13	424	1,271	63	216	563
시·도지사	-	-	-	-	4	-	-	12
구·시·군의 장	24	6	-	6	76	6	16	86
시·도 의원	지역구	61	15	2	55	24	66	163
	비례대표	7	3	-	4	1	3	20
	교육의원	-	-	-	-	1	-	4
구·시·군 의원	지역구	479	64	6	320	25	121	244
	비례대표	101	9	5	39	105	7	34

5. 성별·연령별 당선인수

구 분	합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0세미만	30세이상 39세이하	40세이상 49세이하	50세이상 59세이하	60세이상 69세이하	70세이상
계 (구성비율, %)	3,872 (100.0)	3,343 (86.4)	529 (13.6)	12 (0.3)	250 (6.5)	1,538 (39.7)	1,552 (40.1)	505 (13.0)	15 (0.4)
시·도지사	16	16	-	-	-	2	9	5	-
구·시·군의 장	230	227	3	-	-	36	120	71	3
시·도 의원	지역구	655	623	32	1	44	278	256	75
	비례대표	78	21	57	-	8	27	15	1
	교육의원	5	5	-	-	-	1	4	-
구·시·군 의원	지역구	2,513	2,403	110	6	165	1,061	996	277
	비례대표	375	48	327	5	33	134	143	58

6. 재산 및 납세신고액별 당선인수

(1) 재산신고액별 당선인수

구 분	합 계	없 음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5억원미만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70억원미만	7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계	3,872	218	287	333	1,682	666	558	85	26	11	6	0
시·도지사	16	-	-	-	5	3	6	2	-	-	-	-
구·시·군의 장	230	6	3	8	80	61	55	10	4	1	2	-
시·도 의원	지역구	655	35	34	35	268	134	112	23	8	4	2
	비례대표	78	7	4	4	21	15	21	5	-	-	1
	교육의원	5	-	-	1	1	2	1	-	-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2,513	153	208	256	1,124	405	315	35	12	4	1
	비례대표	375	17	38	29	183	46	48	10	2	2	-

(2) 납세신고액별 당선인수

구 분	합 계	없 음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미만
계	3,872	41	431	310	1,017	545	1,157	194	177
시·도지사	16	-	-	-	-	-	13	-	3
구·시·군의 장	230	-	6	3	10	18	138	26	29
시·도 의원	지역구	655	3	54	39	152	101	220	40
	비례대표	78	-	8	6	14	8	26	9
	교육의원	5	-	-	-	-	-	5	-
구·시·군 의원	지역구	2,513	27	320	226	737	371	654	102
	비례대표	375	11	43	36	104	47	101	17

※ 주 : 납부신고액은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신고액의 합계임.

7. 병역신고사항별, 전과건수별 당선인수

구 분	병역신고 사항별 당선인수				전 과 건 수 별 당 선 인 수											
	계	군필	군미필	해당없음 (비대상등)	계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계	3,872	2,877	468	527	261	210	42	6	2	-	-	1	-	-	-	-
시·도지사	16	12	4	-	2	2	-	-	-	-	-	-	-	-	-	-
구·시·군의 장	230	193	34	3	14	12	2	-	-	-	-	-	-	-	-	-
시·도 의원	지역구	655	539	84	32	40	35	4	1	-	-	-	-	-	-	-
	비례대표	78	16	6	56	4	2	2	-	-	-	-	-	-	-	-
	교육의원	5	5	-	-	-	-	-	-	-	-	-	-	-	-	-
구·시·군 의원	지역구	2,513	2,076	326	111	193	152	33	5	2	-	1	-	-	-	-
	비례대표	375	36	14	325	8	7	1	-	-	-	-	-	-	-	-

#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일명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이 선거사상 최초로 전개되어 후보자는 물론 정당,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어 그동안 고질적인 선거병폐로 지목되어 온 지연·혈연 및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타파하고, 정치발전을 기할 수 있는 선진선거문화 개선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니페스토는 선진선거문화를 이끌어 내려는 선관위·시민단체·언론 3자의 공익적 결합으로 이뤄낸 선거문화 혁명이었으며, 특히 매니페스토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정책선거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이번 선거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선거개혁운동이자 정책프로 그램인 매니페스토가 견인차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한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공약개발에 필요한 정보접근이 어렵고 후보자의 공약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당선자의 공약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책선거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당선자 공약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정책이행 선포식을 갖는 등 당선자의 정책이행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매니페스토 평가지표에 의한 선거공약을 평

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민선 4기를 출범하면서 약속하였던 정책들의 이행계획과 이행평가계획을 다시 지역 주민들에게 선포·약속하는 장으로 민선 4기 출범과 정책이행 선포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계가 참여하는 비전과 정책이행에 대한 지역사업 보고회를 통하여 정책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당선자, 정당, 시민단체, 언론과 지역주민 참여하에 선거시기에 약속하였던 정책의 이행여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정책의 이행상태를 확인·점검하는 비전과 정책이행에 대한 지역사업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만큼 재·보궐선거시 등 향후선거에서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재·보궐선거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를 접목시켜 새로운 선거문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내년 대통령선거시에도 매니페스토를 적극 도입·추진함으로써 진정한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선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2006년도 상·하반기 각종 선거 주요일정

## 1. 상반기 재·보궐선거 : 2006. 7. 26(수)

실시되는 선거 : 2005. 10. 01 ~ 2006. 6. 26까지의 사이에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

실시 선거구 (2006. 6. 10 현재)

선거명	선거구명	궐원 전 국회의원	실시 사유	비고
국회의원	송파구갑	한나라당 맹형규	사직(서울시장 입후보)	보궐선거
	성북구을	열린우리당 신계륜	피선거권상실(정치자금법위반)	
	부천소사구	한나라당 김문수	사직(경기도지사 입후보)	재선거
	마산시갑	한나라당 김정부	당선무효(배우자의 선거법위반)	

## 주요 선거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 사항	기준일
3. 28부터	화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7. 10까지	월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7. 7부터 7. 11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제자신고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7. 11부터 7. 12까지	화 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7. 17까지	월	선전벽보 첨부 부제자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선거공보 동봉)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7. 18까지	화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7. 19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7. 21까지	금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7. 26	수	투표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개표	선거일
8. 5까지	토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8. 25까지	금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9. 24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 이내

## 2. 하반기 재·보궐선거 : 2006. 10. 25(수)

실시되는 선거 : 2006. 6. 27 ~ 2006. 9. 30까지의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

## 3. 시·도 교육위원선거 : 2006. 7. 31(월) 예정

※ 울산광역시 8. 11(금) 예정

- 선거 실시 시·도 : 15개 시·도 (제주도 제외) ※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하여 5·31지방선거시 교육위원 5명 기선출
- 선거구수 : 55개(시·도당 2~7개선거구)
- 선출위원수 : 139명(임기 4년)